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53

제안연월일 : 2022년 12월 19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동 조례안 제2조에서는 "학교"와 "교육기관"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, 교육기관의 대표적 기관이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를 교육기관과 별도 분리하여 정의하는 이유가 불분명함.

○ 더욱이 상위법령인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을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, 법적 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위해 "교육기관"을 "교육행정기관"으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동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 중 "교육기관"을 "교육행정기관"으로 함(안 제2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.

3. **참고사항**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,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,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"교육기관"을 "교육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
1. (생략) 2. "교육기관"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 청을 말한다. 제6조(지진 대응 교육·훈련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·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	1. (개정안과 같음) 2. "교육행정기관"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 제6조(지진 대응 교육·훈련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·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
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에 관한 예보·경보 등을 학교 및 <u>교육기관</u> 에 신속하게 전 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·통신 관련 시 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시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에 관한 예보·경보 등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·통신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7조(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)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수 있다. ③ ~ ④ (생략)	제7조(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)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③ ~ ④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·교직원 등의 안전과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 - 2. "교육행정기관"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내실 있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2.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- 3.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4.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·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진 대응 교육·훈련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·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에 관한 예보·경보 등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·통신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)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, 자치구,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